

엠폙스 환자 6명 추가 확인

- 국내발생 추정 환자 5명, 해외유입 추정 환자 1명
- 질병관리청, 의심증상 신고자의 개인정보는 보호되고 있으므로 적극적인 신고 당부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국내 34번째 엠폙스 확진환자 발표 이후 6명의 환자(#35~#40)가 추가로 발생*하였다고 밝혔다.

* 4월 26일 4명, 4월 27일 2명

신규 확진환자들의 거주지는 서울 3명, 인천 1명, 강원 1명, 대구 1명이며, 모두 내국인으로 의심증상 발생 후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로 본인이 신고한 사례가 4건, 의료기관의 신고가 2건 이었다.

동 환자들의 주요 증상으로는 발진, 발열, 림프절병증 등이 확인되었으며, 전반적인 상태는 양호한 편이라고 밝혔다.

6명 중 5명은 증상 발현 3주 이내에 해외 여행력이 없었고, 국내에서 위험노출력이 확인되어 국내발생으로 추정되며, 1명은 해외여행력이 있었고 방문 국가인 일본에서의 위험 노출력이 확인되어 해외유입으로 추정하고 있다.

방역당국은 확진환자의 위험노출력 등 감염경로와 접촉자에 대한 상세 역학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추가 발생 최소화를 위해 적극적인 증상 홍보 및 신고 독려, 예방수칙 제작·배포, 고위험시설 지도 및 안내 등 위험소통을 강화하여 전파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엠폙스는 백신, 치료제, 진단 역량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는 등 현 방역대응 역량으로 충분히 관리가 가능한 질환*으로, 의심증상이 있을 시 가까운 의료기관이나 보건소를 찾아 진료, 검사 받을 것”을 당부하였다.

* 세계보건기구(WHO)도 ‘엠펙스는 제한된 감염경로로 인해 관리가 가능한 질병’이라고 안내(’22.9.1.)

국민들에게는 “ ▲엠펙스 발생국가 방문력이나 ▲의심환자 밀접접촉(피부·성접촉) 등의 위험요인이 있거나, ▲발진 등 엠펙스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로 문의”하고 “모르는 사람들과의 밀접접촉(피부접촉, 성접촉 등)에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더불어, 방역당국에서는 엠펙스 의심증상 신고자의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고 있으므로, 의심증상이 있을 경우 주저하지 말고 신속하게 신고 및 문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위 내용은 관련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붙임> 1. 확진 환자의 정보공개 지침
 2. 엠펙스 질병개요
 3. 엠펙스 국외 발생 동향
 4. 엠펙스 국내 발생 환자 특성(4.27. 기준)
 5. 엠펙스 국외 환자 특성(WHO, 4.18. 기준)
 6. 엠펙스 예방수칙 안내문
 7. 감염병 보도준칙(2020.4.28.)

| | | | | |
|-------|----------------------|-----|-----|--------------------|
| 담당 부서 | 감염병위기대응국 신종감염병대응과 | 책임자 | 과 장 | 이형민 (043-719-9100) |
| | | 담당자 | 연구관 | 이수연 (043-719-9130) |

□ 관련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감염병예방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3. "감염병환자"란 감염병의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하여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제11조제6항의 진단 기준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이나 제16조의2에 따른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실험실 검사를 통하여 확인된 사람을 말한다.

제6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② 국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속하게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①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성별, 나이, 그 밖에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

동법 시행령

제22조의2(감염병위기 시 공개 제외 정보)(12.30 시행) ① 법 제34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성명

2. 읍·면·동 단위 이하의 거주지 주소

3. 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별 특성을 고려하여 감염병의 예방과 관계없다고 정하는 정보

②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제3호에 따라 감염병의 예방과 관계없는 정보를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질병관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동법 시행규칙

제27조의4(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위기상황, 감염병의 특성 및 역학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개하는 정보의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⑥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접근권) 장애인등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등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동등하게 이용하고,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공개 원칙

① 공개 대상 : 감염병환자

- ▶ **감염병환자**란 감염병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하여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진단을 통해 감염병이 확인된 사람(「감염병예방법」 제2조제13호)

② 공개 시점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 발령 시

③ 공개 기간 : 정보 확인 시~확진자가 마지막 접촉자와 접촉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까지

- ▶ 공개 기간이 경과되면 장소 등 공개내용을 삭제함

④ 공개 범위

- ▶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접촉자 현황 등의 정보공개는 **역학적 이유, 법령상의 제한, 확진자의 사생활 보호** 등의 다각적 측면을 고려하여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정보에 한하여 공개함**

- (개인정보) 성명, 성별, 연령, 국적, 거주지 주소(읍·면·동 단위 이하) 및 직장명 정보 등은 공개하지 않음.
단, 직장명은 직장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시켰을 우려가 있는 경우 공개할 수 있음

- ▶ 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의2에 근거하여 **성명, 성별, 나이, 거주지 주소(읍·면·동 단위 이하)** 정보 등은 제외하여야 함

- (시간) 코로나19는 증상 발생 2일 전부터 격리일까지 공개함

- ▶ 역학조사 결과 증상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는 검체채취일 2일 전부터 격리일까지를 대상으로 함

- (장소·이동수단) 확진자의 접촉자가 발생한 장소 및 이동수단을 공개함

- ▶ 장소 및 이동수단을 특정하지 않으면 다수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공간적, 시간적 정보를 최대한 특정하여 공개함

- (건물) 특정 층, 특정 호실,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특정 매장명, 특정 시간대 등

- (상호) ▶ 상호명, 정확한 소재지 정보(도로명 주소 등)

- (대중교통) 노선번호, 호선·호차, 탑승지 및 탑승일시, 하차지 및 하차일시

- ▶ 주의사항

- 상호명 및 소재지 등 공개 시 사실관계를 재차 확인*하여 잘못된 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주의

* 시·도 및 시·군·구 등 관련 상호기관 간 재확인

붙임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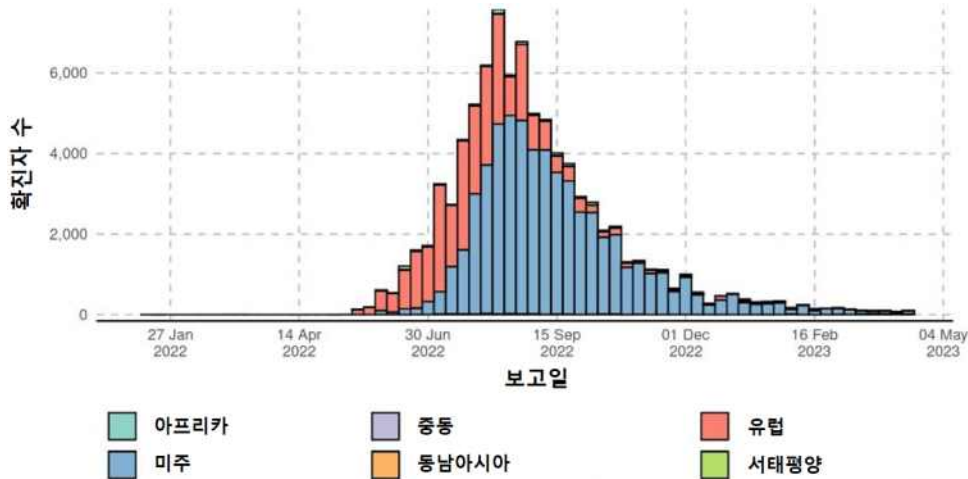
엠폭스 질병개요

| 구 분 | 내 용 |
|-------------|---|
| 정의 | 원숭이두창 바이러스(Monkeypox virus) 감염에 의한 급성 발열, 발진성 질환 |
| 방역이력 및 발생현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2급감염병 1958년 코펜하겐 국립혈청연구소가 사육 원숭이에서 첫 발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70년 DR콩고에서 첫 인간 감염사례 이후 중앙 및 서부 아프리카의 농촌 열대우림지역에서 주로 발생 대다수 사례는 DR콩고와 나이지리아에서 발생 보고, 두창과 유사하나 중증도는 낮음 2022년 5월 이후 엠폭스 비풍토국인 유럽과 북미를 중심으로 유행하여 감염사례와 발생지역이 확대되었으며, 2022년 6월 국내 첫 확진 사례가 보고됨 |
| 병원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숭이두창 바이러스(Monkeypox virus) |
| 감염경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수공통감염병으로 원숭이두창 바이러스에 감염된 동물(쥐, 다람쥐, 프레리도그와 같은 설치류 및 원숭이 등), 감염된 사람 또는 바이러스에 오염된 물질과 접촉할 경우 감염될 수 있으며, 태반을 통해 감염된 모체에서 태아로 수직감염이 발생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부병변 부산물) 감염된 동물-사람의 혈액, 체액, 피-부, 점막병변과의 직·간접 접촉 (매개물) 감염환자의 체액, 병변이 묻은 매개체(린넨, 의복 등) 접촉을 통한 전파 (비말) 코, 구강, 인두, 점막, 폐포에 있는 감염비말에 의한 사람간 직접 전파 (공기) 바이러스가 포함된 미세 에어로졸을 통한 공기전파가 가능하나 흔하지 않음 |
| 잠복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5~21일(평균 6~13일) |
| 주요증상 및 임상경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발열, 오한, 림프절 부종, 피로, 근육통 및 요통, 두통, 호흡기 증상(인후통, 코막힘, 기침 등) 등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며, 보통 1~4일 후에 발진 증상이 나타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2년 5월 이후 비풍토병 국가에서 유행 중인 사례는 발진 전 전구기(발열 등)가 없거나 발진 후에 전구기가 나타나기도 함. 특정부위(항문생식기)에 발진 수가 5개 미만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항문궤양, 구강 점막 궤양, 항문직장 통증, 안구 통증, 이급후증 등을 동반하는 사례가 다수 보고되고 있음 발진은 얼굴, 입, 손, 발, 가슴, 항문생식기 근처 등에서 나타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발진은 대체로 반점부터 시작하여 여러 단계로(반점-구진-수포(물집)-농포(고름)-가피(딱지))로 진행되며 초기에는 뾰루지나 물집처럼 보일 수 있으며, 통증과 가려움증 동반하기도 함 * 임상증상이 비슷한 수두, 홍역, 옴, 매독 등과 감별 진단 중요함 '22년 이후 유럽과 북미를 중심으로 발생 중인 서아프리카 계통 엠폭스는 대부분 2~4주 후 자연 치유되며, 치명률은 1% 미만으로 보고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역저하자, 8세 미만 소아, 습진 병력, 임신 및 모유 수유자에서 중증도가 높을 수 있음 * 풍토병 국가를 중심으로 발생하는 중앙아프리카 계통 엠폭스의 치사율은 약 10%로 보고됨 전구기(3~5일 간): 전염력이 강한 시기 |
| 진 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검체(피부병변액, 피부병변조직, 가피, 구인두도말, 혈액 등)에서 특이 유전자 검출 |
| 치 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부분 자연치료 또는 대증치료 필요시, 국가 비축 항바이러스제(테코비리마트) 치료 시행 |
| 환자 관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표준주의, 접촉주의, 비말주의 준수 환자: 감염력이 소실될 때까지(피부병변의 가피가 탈락되고 새로운 피부형성) 1인실 격리 입원·치료 의사환자: 1인실 격리병상 배정 후 검체 채취(검사결과 시까지 격리유지) |
| 예 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방접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3세대 두창 백신은 효과가 입증되어 FDA(미국)과 EMA(유럽)에서 두창과 엠폭스 백신으로 3세대 백신을 승인한 바 있음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감염된(감염의 위험이 있는) 사람 또는 동물과의 직·간접적 접촉 피하기 감염된 환자가 사용한 물품(린넨과 같은 침구류 등)과의 접촉 피하기 의심되는 사람, 동물 또는 물건과 접촉을 한 경우, 비누와 물로 손을 씻거나 알코올 성분의 손 소독제를 이용하여 깨끗이 하기 엠폭스 발생국(장소)을 여행하는 경우, 바이러스를 보유할 수 있는 동물과의 접촉 피하기 |

붙임 3 | 엠폭스 국외 발생 동향

□ 22년~23년 4월 16일, 110개국, 87,039명 확진, 120명 사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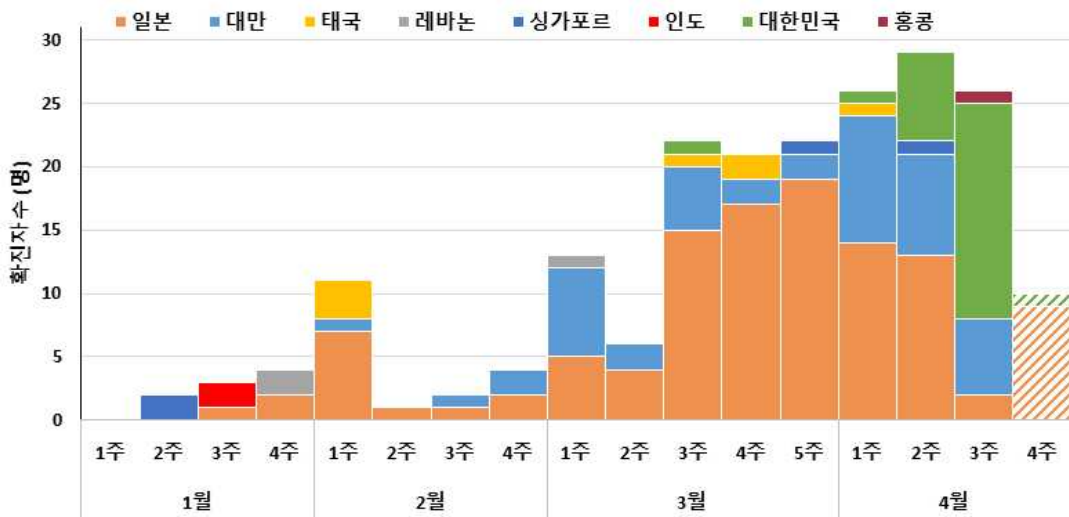
- (발생추이) '22년 8월 2주차(8.8~8.14) 7,576명 발생 이후 감소하는 추세이나, 아시아 지역은 올해 2~3월 이후 증가세 지속



<'22-'23년 전 세계 엠폭스 발생 현황, '22.1.1.~'23.4.16., WHO>

- ('23년 아시아 발생현황) '23.4.25. 기준, 총 8개국 202명 발생
- (국가별 현황) 일본 112명(55.4%), 대만 46명(22.8%), 한국 27명(13.4%), 태국 7명(3.5%), 싱가포르 4명(2.0%), 레바논 3명(1.5%), 인도 2명(1.0%), 홍콩 1명(0.5%)

※ (일본) 22년 8명 -> 23년 112명, (대만) 22년 4명 -> 23년 46명



<'23년 아시아 국가별/주차별 발생현황('23.1.1.~4.25.)>

붙임 4

엠폭스 국내 발생 환자 특성(4.27. 기준)

○ (현황) 국내 확진자 40명*

* '23.4.7.이후 35명 발생

- 33명은 최초 증상 발현 전 3주 이내 해외 여행력 없고, 1명은 해외여행력은 있으나 증상 발현과 해외여행력이 연관성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국내발생으로 추정
- 1명은 해외여행력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어 해외유입으로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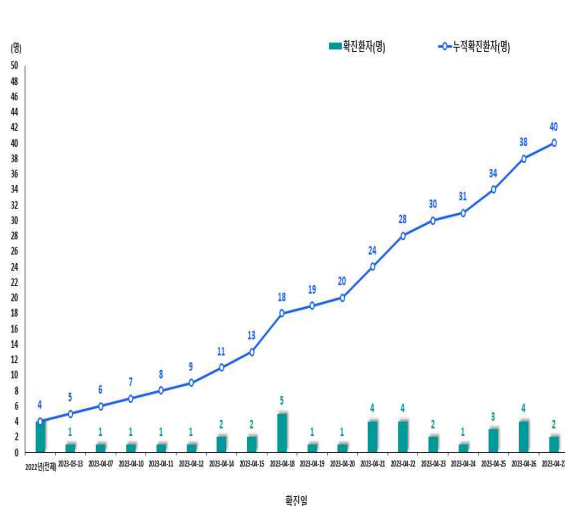
○ (추정감염경로) 해외유입 및 해외유입 관련 6건, 국내발생 추정 34건

- 환자 접촉 3건, 밀접 접촉(피부 접촉, 성접촉 등) 36건, 환자 치료병상 의료진 주사침 자상 1건

○ (임상증상) 항문생식기 통증 동반한 국소피부병변(궤양, 종창, 발진) 발생 다수

- 증상 초기 비특이적인 증상* 혹은 전구기 증상 없이 항문생식기 1-2개 발진만 단독 발생 또는 발진 후 전신증상 발현 사례도 있음

* 발열, 두통, 근육통, 오한 등



<그림1. 국내 발생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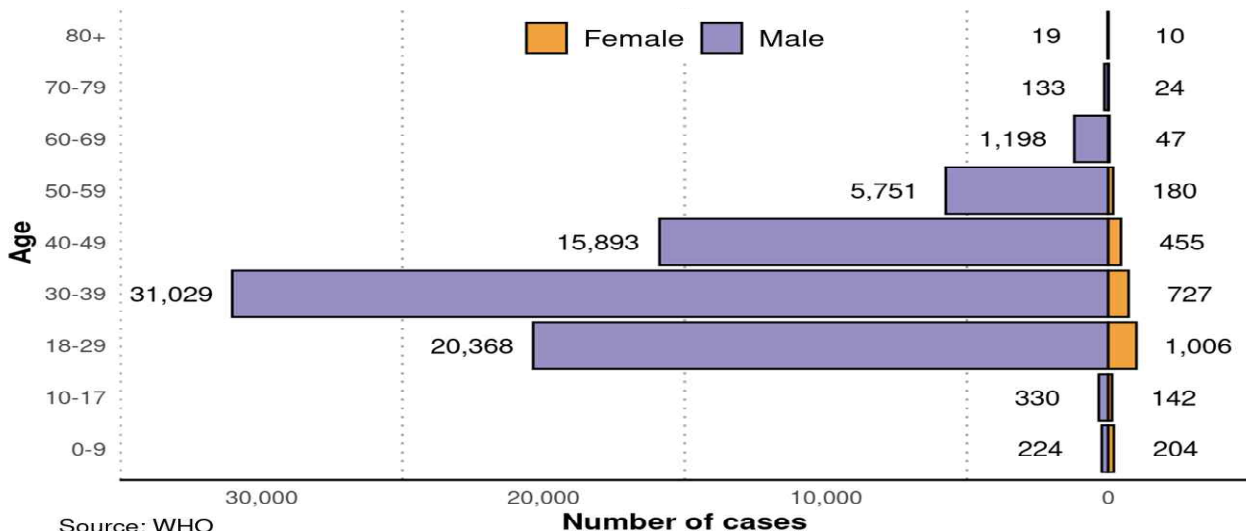


<그림2. 확진환자 임상증상 특성>

붙임 5

엠폙스 국외 환자 특성(WHO, 4.18. 기준)

- (성별) 엠폙스 확진자의 성별은 남성이 96.4%였으며, 그 중 18~44세의 남성이 79.2%를 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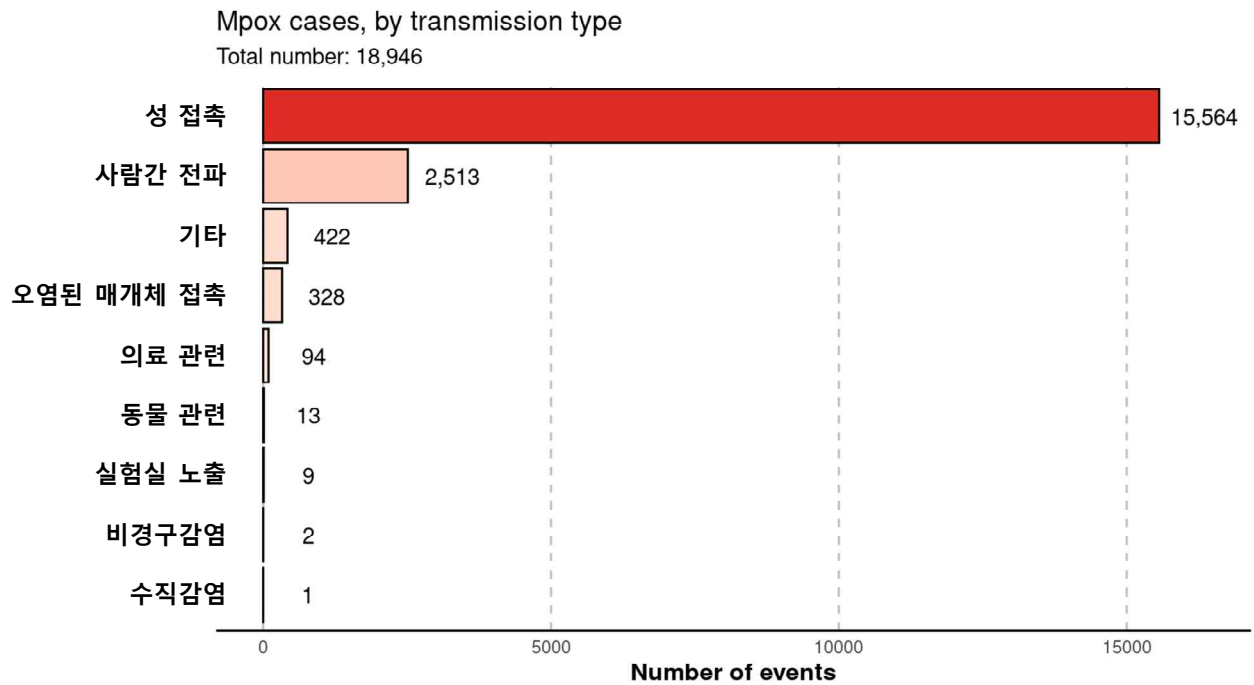


Source: WHO
77,740 cases with age-sex data

<엠폙스 확진자의 성별 및 연령, WHO>

- (남성) 성적지향이 확인된 30,438명 중 84.1%(25,690명)이 남성과 성관계한 남성(MSM)이었으며, 7.8%(2,004명)이 양성애자인 남성
- (여성) 엠폙스 확진자 중 3.6%(2,800명)이 여성으로, 성적지향이 확인된 여성 중 이성애자(heterosexual)가 96%(979명/1,021명)이었고, 가장 많은 노출 환경은 가정이 41%(46명/114명)이었고, 가장 많은 전파경로는 성적접촉이 52%(246명/476명)임
- (치료경과) 엠폙스 확진자 중 치료 경과의 정보가 있는 사례 중 사망자는 27명이었으며, 중환자실 입원은 14,408명 중 45명(0.3%), 입원은 48,243명 중 4,083명(8.8%, 입원의 목적은 격리 또는 치료)
- (증상) 엠폙스 확진자 중 최소 하나 이상의 증상이 보고된 경우는 81%이며, 세부 증상으로는 발열 59.2%, 전신발진 47.5%, 생식기발진 44.1%, 두통 31.0% 림프절병증 29.2%, 근육통 28.2% 등 순임

- (HIV) HIV 감염여부가 확인된 36,511명 중 17,691명(48.5%)이 HIV 양성
- (의료인) 의료기관 종사자는 1,224명으로 대부분 지역사회에서 감염되었으며, 직업적인 노출로 인한 감염 여부는 추가 조사 중
- (감염경로) 엠폭스 감염경로가 조사된 18,946명 중 성적 접촉이 15,564명 (82.1%)으로 확인



<엠폭스 확진자의 감염경로, WHO>

붙임 6 | 엠폭스 예방수칙 안내문

안내문1(대국민용 및 발생지역 방문자용)



엠폭스 예방수칙

- ✔ 손 씻기 철저 및 오염된 손으로 눈, 코, 입 등 점막 부위 접촉 삼가
※ 의심증상자 접촉 후 비누와 물 사용 손씻기 또는 알코올 성분 손소독제 사용
- ✔ 모르는 사람이나 다수의 상대와 밀접접촉(피부접촉, 성접촉 등) 삼가
- ✔ 엠폭스 의심증상자 피부병변(발진이나 딱지 등) 접촉 삼가
- ✔ 엠폭스 의심증상자 사용 물품(침구류, 수건, 의복, 세면대 등) 접촉 삼가
※ 엠폭스 의심증상: 항문직장, 생식기, 구강, 결막, 요도 등의 피부·점막의 발진이나 궤양 / 항문직장, 생식기 등의 통증 / 발열 / 두통 / 림프절비대 / 요통 / 근육통 / 이급후증 / 무기력증 등



엠폭스 의심증상(발진 등) 발생 시 행동요령

- ✔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나 1339로 즉시 신고하고 방역당국 안내에 따름
- ✔ 엠폭스 진단 전까지 동거인을 비롯한 주위사람들과 접촉 삼가
* 침구, 식기, 컵 등 물품을 별도로 사용하고 가능하면 생활공간을 분리
- ✔ 철저한 손위생 및 가족, 동거인 등 보호하기 위해 개인보호구 사용
* 피부병변을 긴 소매 및 바지 등으로 감싸 노출 최소화, 마스크 착용, 일회용 장갑 등
- ✔ 의심증상자의 쓰레기 및 침구는 별도로 분리하여 관리
* 확진되면 쓰레기는 폐기물로 별도 분리 배출하고 침구도 별도 세탁 시행
- ✔ 애완동물을 포함한 기타 동물과의 접촉 삼가

엠펙스(원숭이두창) 예방 및 행동 수칙



발생지역 방문자용



엠펙스 발생지역 방문 시 주의사항

- ✔ 방문 전, 엠펙스 발생지역 확인하기
- ✔ 손 씻기 철저 및 오염된 손으로 눈, 코, 입 등 점막 부위 접촉 삼가
 - ※ 의심증상자 접촉 후 비누와 물 사용 손씻기 또는 알코올 성분 손소독제 사용
- ✔ 모르는 사람이나 다수의 상대와 밀접접촉(피부접촉, 성접촉 등) 삼가
- ✔ 엠펙스 의심증상자 피부병변(발진이나 딱지 등) 접촉 삼가
- ✔ 엠펙스 의심증상자 사용 물품(침구류, 수건, 의복, 세면대 등) 접촉 삼가
 - ※ 엠펙스 의심증상 : 항문직장, 생식기, 구강, 결막, 요도 등의 피부·점막의 발진이나 궤양 / 항문직장, 생식기 등의 통증 / 발열 / 두통 / 림프절비대 / 요통 / 근육통 / 이급후증 / 무기력증 등



엠펙스 발생지역 방문 후 주의사항

- ✔ 귀국 검역 시 엠펙스 의심증상 있으면 검역관에게 알리기
- ✔ 귀국 후 21일간 발열 및 기타 관련 증상 자가 모니터링



엠펙스 의심증상(발진 등) 발생 시 행동요령

- ✔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나 1339로 즉시 신고하고 방역당국 안내에 따름
- ✔ 엠펙스 진단 전까지 동거인을 비롯한 주위사람들과 접촉 삼가
 - 침구, 식기, 컵 등 물품을 별도로 사용하고 가능하면 생활공간을 분리
- ✔ 철저한 손위생 및 가족, 동거인 등 보호하기 위해 개인보호구 사용
 - 피부병변을 긴 소매 및 바지 등으로 감싸 노출 최소화, 마스크 착용, 일회용 장갑 등
- ✔ 의심증상자의 쓰레기 및 침구는 별도로 분리하여 관리
 - 확진되면 쓰레기는 폐기물로 별도 분리 배출하고 침구도 별도 세탁 시행
- ✔ 애완동물을 포함한 기타 동물과의 접촉 삼가

안내문2(대국민용)

◦ 엠폭스 의심증상 발생 시 행동요령 ◦

- 엠폭스 의심증상이 있으면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 또는 1339로 즉시 신고
- 방역당국의 조치사항 안내에 따름
- 엠폭스 의심증상이 있으면 진단 전까지 동거인을 비롯한 주위 사람들과의 접촉 삼가
- 침구, 식기, 컵 등 물품을 별도로 사용하고
가급적 생활공간 분리
- 가족, 동거인 등 보호를 위해 손 씻기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 철저 및 개인보호구 사용
- 피부병변을 긴소매 및 바지 등으로 감싸 노출 최소화
- 일상생활에서도 마스크, 일회용 장갑 등 착용
- 의심증상자의 쓰레기 및 침구는 별도로 분리하여 관리
- 확진 시 쓰레기는 폐기물로 별도 분리 배출하고 침구도 별도 세탁 시행
- 애완동물을 포함한 기타 동물과의 접촉 삼가

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

“
질병관리청은
환자 진단·치료와 접촉자 관리 등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조치 중이며,
국내 유입 및 확산을 막기 위해
24시간 대비하고 있습니다.
”



엠폭스 예외는 없습니다

◦ 엠폭스 안내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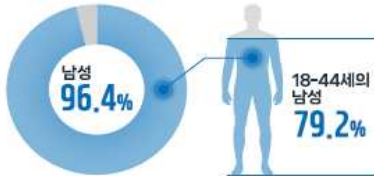
◦ 엠폭스 발생현황 ◦

- 2023년 4월 18일 기준(WHO) 총 110개국에서 87,039명이 확진되었고 전세계 대부분 지역에서 발생이 감소하고 있으나, 2023년 이후 일본과 대만을 포함한 서태평양 지역에서의 발생은 증가 추세
* (일본) 22년 8명 -> 23년 103명 (2월 중순부터 발생 증가)
(대만) 22년 4명 -> 23년 37명



◦ 엠폭스 확진환자 주요 특징 ◦

- 국외 엠폭스 확진 환자의 성별은 남성이 96.4%, 그중 18~44세의 남성이 79.2%를 차지
* WHO, '23. 4. 18. 기준



◦ 엠폭스 주요증상 ◦

- 국내 확진 환자의 주요 증상으로는 항문직장, 생식기, 구강, 결막, 오도 등의 피부·점막의 병변(발진이나 궤양 등), 피부 통증(항문직장, 생식기 등)이 있으며, 발열, 두통, 림프절 비대 등도 나타남



◦ 엠폭스 예방수칙 ◦

- 손 씻기 철저 및 오염된 손으로 눈, 코, 입 등 점막 부위 접촉 삼가
- 익명의 사람과 밀접접촉 (피부접촉, 성접촉 등) 삼가
- 다수의 상대와 밀접접촉 (피부접촉, 성접촉 등) 삼가
- 엠폭스 의심증상자 피부병변(발진이나 딱지 등) 접촉 삼가
- 엠폭스 의심증상자 사용 물품 (침구류, 수건, 의복, 세면대 등) 접촉 삼가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 「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 보도준칙

■ 전문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 기본 원칙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 나. 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 다. 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 신종 감염병의 보도

- 가. 발생 원인이나 감염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 나. 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 다. 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 나. 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 다. 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4. 감염병 연구 결과 보도

-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 나. 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도한다. (예: 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사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 나. 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 다. 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 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의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 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할 표현

-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첫 환자 발생한 메르스 ‘치사율 40%’ …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 ‘코리아 포비아’ 악몽”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 ‘살인진드기’ 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나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 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메르스 ‘1000배’ ...홍콩독감 유입 땀 대재앙”

■ 권고 사항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 별첨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①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성별, 나이, 그 밖에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②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한 정보가 그 공개목적의 달성 등으로 공개될 필요가 없어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공개된 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9. 29.>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1. 공개된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공개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④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한 이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개된 정보의 정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보공개 및 삭제와 이의신청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3. 4., 2020. 9. 29.>
 [본조신설 2015. 7. 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7조의4(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위기상황, 감염병의 특성 및 역학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개하는 정보의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0. 6. 4., 2020. 9. 11.>
 ②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6. 4., 2020. 9. 11.>
 [본조신설 2016. 1. 7.]
 [제27조의3에서 이동 <2020. 6. 4.>]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754호, 2020. 10. 7.>
 이 규칙은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 제42조의3제2항 및 별지 제30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한국기자협회(http://www.journalist.or.kr/news/section4.html?p_num=17)

<참고2> 감염병 보도시 기본 항목

- 질병정보 (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진단,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 의심 및 확진환자 현황 (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건수)
- 확진 환자 관련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
-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 부 칙

이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 단체 및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